#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45 발의연월일: 2024. 12. 16.

발 의 자:정동만·김성원·우재준

박성민 · 김선교 · 김승수

정희용 • 박상웅 • 이종배

이상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 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통합하거나 비상설로 구성·운영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음.

이에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 법률 제 호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소방청장"을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으로, "둔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

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소방청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
원회)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원회) ①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u>소방청장</u> 소속으로 소방	필요한 경우 소방청
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이하	<u> 장</u>
"위원회"라 한다)를 <u>둔다</u> .	
	<u>구성・운영</u>
	<u>할 수 있다</u>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⑤ 소방청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